

식품안전분야 위해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Strengthening the Risk Communication of Food Safety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식품안전이 새로운 사회위험화하면서 정부와 소비자간의 위해소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FSA, CODEX, 미국, 일본 등은 위해소통 강화를 위해 위해소통체계를 전문화, 통합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담부서 없이 특정과에서 간헐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식약청도 식약청과 식품안전정보원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 모두 위해소통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이다. 2012년에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65점, 식품사고 대응은 55점, 정부의 식품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신속성, 일관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와 소비자간 위해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과 소비자의 감성적 판단간의 간극(gap)을 좁히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소비자의 정보구득 편리성 제고, 위해소통 인프라 강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1. 들어가며

정부와 소비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과거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여러 IT 매체에 의한 정보의 범람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질병, 빈곤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Social Risk)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위험화 하고 있는 식품안전분야는 과학적 사실과 소비자의 감성적 경험간에 발생하는 간극(gap)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관한 정부와 소비자간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은 타 분야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CODEX,

EFSA, EU, 미국, 일본 등도 소비자와 정부간의 위해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의 전문화, 통합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적 아젠다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과학적으로 위대한 분야와 상대적으로 위해정도는 낮더라도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식품관련부처가 각기 나름대로 위해소통을 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담부서 없이 식품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하여 대응하고 있고, 식약청도 식약청과 산하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이 사안별로 대응하는 소통체제로 일관성과 신속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고에서는 식품 위해정보소통에 관한 정의 등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위해정보교류 정책 추진체계, 2005년 이후 대표적인 식품사고에 대한 정부대응 평가, 그리고 식품 위해정보교류에 대한 소비자, 정책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등을 제시하고, 향후 위해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개진하였다.

assessment) 및 위해 관리(Risk management) 과정에서 소비자, 생산자, 정부, 업계, 학계 등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위해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위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OECD에서는 위해 커뮤니케이션은 개인, 집단, 조직간에 위해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2. 식품위해소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정의¹⁾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해 평가(Risk

2) 목표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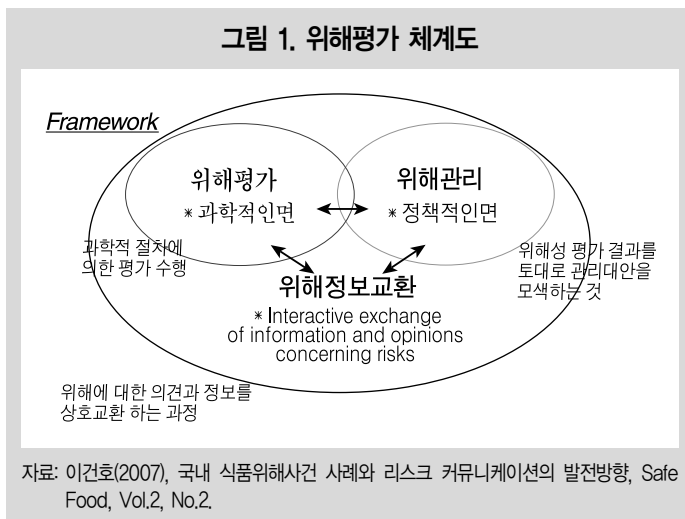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위해 분석을 위한 위해 평가와 위해 관리의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계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3) 구성요소³⁾

US FDA에서는 위해소통의 구성요소로 세가지 M을 들고 있다. 즉, Message (What to say), Messenger (Who to say it), Media(How it should be presented)이다.

4) 추진 절차⁴⁾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일



1) 식약청(2006). 식품등의 위해 커뮤니케이션 실무매뉴얼.

2) FAO(2005). Food Safety Risk Analysis Part 1 An Overview and Framework Manual.

3) U.S FDA(2006). JIFSAN.

4) 농림수산식품부(2006).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소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반적인 절차는 기초정보 → 예비조사 및 협의
→ 정보교육과 배포 → 검토와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5) 8대 원칙⁵⁾

CODEX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해소통의 8대 원칙은 우선 대상자 파악, 전문가 활용, 위해전달 전문가 양성, 정보 신뢰성 제고, 책임공유, 과학적 판단, 투명성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해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다.

6) 단계별 고려사항⁶⁾

<표 1>에는 위해소통 실시 4단계별 고려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제시되어있다.

3. 소비자 특성 등 최근 연구추진 동향

위해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간의 인식차이가 크고, 전문가들은 위해를 위해의 정도와 위해가능성의 곱에 해당하는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반면, 일반인들은 두려움과 알려지지 않은 감정적인 측면을 위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⁷⁾ Fischhoff 등의 실험에 의하면 소비자의 위해에 대한 평가에서 두려움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의사결정 연구에서는 소비자 감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간과되어 기존 위해연구가 분석적, 인지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면 최근 연구는 소비자의 경험적 감정(experienced affect), 정서(emotion), 느낌(feeling) 등에 초점을 맞춘

표 1. 위해소통 실시의 단계별 고려사항

실시 단계	고려사항	예상 문제점
위해인지 단계	• 다양한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의 접근성 제공	• 식품관련 지식 부재 및 필요한 정보 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한 혼란 가중
사전조사 단계	•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 • 식품안전관리의 신속성 확보	• 해당식품 이미지 훼손 • 결과 발표시까지 불안감 증폭 • 수입식품의 경우 통상마찰 요인 작용 우려
관리 대책 마련 단계	• 관리대책 마련에 따른 과학적·객관적 정보의 제공	• 뒤늦은 발표로 인한 식품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종결 단계	• 종합적 정보의 제공 가능	• 뒤늦은 발표로 인한 식품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 종결된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 야기

자료: 식약청(2006), 식품등의 위해 커뮤니케이션 실무매뉴얼.

5) Working principles for risk analysis for application in the framework of THE CODEX ALIMENTARIUS, 2004.

6) 식약청(2006), 식품등의 위해 커뮤니케이션 실무매뉴얼.

7) 최진식(2009), 위험성 인식의 사회적 증폭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감정적 정보가 다른 정보에 비해 직접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위해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대응시에 전문가 집단 중심의 일방향적 담론은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의 단점은 특정위해로 야기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전문가도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전문가간에도 이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해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감정적 요소의 영향력은 편익 위해보다 더 클 수 있는데 특히 위해에 대한 빠른 판단 시 감정적 요소가 이성적인 것에 비해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위해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위해 결정과 해결과정에 이해 관계자들 및 일반 대중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위해소통에 참여하거나 참여시켜야 하는 대상자는 4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특정 위해에 대해 조직화하는 이해당사자, 조직화는 없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대중, 관찰대중으로서의 오피니언 리더, 마지막으로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참여대상자는 위해 특성과 관리 목표에 따라 참여의 범위와 정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전문가의 판단(과학적 사실)을 어떻게 일반인에게 잘 전달하여 둘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느냐가 위해소통의

관건이며⁹⁾, 이를 위해 교육, 홍보, 계몽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4. 국내 식품위해소통 추진 현황

1) 조직 등 추진체계

(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의 조직은 식품의 위해관리를 수행하는 위해예방정책국, 식품안전국을 포함한 5국과 식품기준부를 포함한 4부로 나뉘고, 특히, 위해예방정책국은 위해예방정책과, 위해정보과, 검사제도과 및 임상제도과를 포함한 4개과로 구성되어있다.

식약청의 위해분석은 그 과정을 보면 식품안전문제가 확인되면, 긴급사안인 경우에는 대응방안을 결정 후 시행하고, 긴급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risk profile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검토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위해정보소통에 해당하는 위해분석전략회의는 위해성 평가 여부와 함께 위해관리대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식약청은 산하에 식품안전정보원을 두고 있는데 식품안전정보원은 식약청의 식품위해 사전예방 활동을 돕는 전문정보기관으로서 식품안전 위기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약 20명의 직원으로 2009년 7월 16일 설치되었

8) 최성락(2010). 식품사고 분석을 통한 위해 소통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9) 이승훈(2009). 현대사회의 위험과 위험관리, 현대사회와 문화.

다가, 2012년 2월 15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두 기관은 <표 2>에 제시된 바와같이 각각 업무분담을 하고 있는데 식품안전정보원은 정보수집의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분석 및 후속조치는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정보의 수집 및 공유 등 위해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없지만 소비안전국의 소비안전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전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그룹의 운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농산물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집한 관련 안전정보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

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형태로 위해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검사,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와 단속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農·消·政위원회 구성을 통해 소비자의 현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식품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에 대한 정보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및 관련협회 11개 단체와 공동과제와 공모과제 형식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표 3>에 제시된 바와같이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정보제공체계

우리나라 관련부처의 홈페이지 구성을 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메뉴는 해당기관

표 2. 식약청과 식품안전정보원의 역할 및 업무영역

구분	역할 및 업무영역	
식약청	① 자료출처 및 목록관리 ③ 정보분석 및 분류 ④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집되거나 중국의 식약관 등 각국 주재관 및 외국의 정부, 해외모니터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매일 보고받아 종합분석(심층조사포함) 후 조치방안 수립(관리등급 결정 등) • 그 결과에 수입금지, 유통금지, 수거검사 등의 후속조치 • 위해물질 저감화, 모니터링, 관련제품 수거·검사 등 • 정보수집 역량강화 교육 등
식품안전정보원	② 정보수집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식품전문기관, 뉴스, 인터넷 등 세계 200개 기관의 정보를 매일 수집하여 식약청에 보고

자료: 식약청 내부자료, 2012.

표 3.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공동 활용 주요 정보내용

정보제공기관		주요 공동 활용 정보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이력추적등록현황정보, GAP인증기준정보, GAP인증현황정보, 친환경인증기준정보, 농약등록정보, 사료검사 결과정보, 안전성검사결과정보, 기타연계를 위한 품목 코드 정보
축산물	농림수산물검역 검사본부	축산물HACCP지정 기준정보, 축산물HACCP지정 현황정보, 동물용의약품 등록현황정보, 잔류물질검사결과정보, 미생물검사결과정보, 수거검사결과정보, 위생감시현황정보, 도축검사현황정보 등
수산물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한국수산과학원	안전성조사현황정보, 패류독소조사현황정보, 원산지표시단속현황정보, 수입수산물 원산지별 검사실적정보, 수입수산물 품종별 검사실적정보, 기타연계를 위한 코드정보, 수산물 품질인증품 조회정보

자료: 농림수산물부(2006), 효과적인 농식품 위험정보소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의(식약청) 소개 위주로 설계되어있으며 이는 농수산물식품부도 마찬가지이다.

즉, 식약청, 농수산물식품부 등의 주메뉴 구성은 U.S FDA와 달리 정보공개, 국민광장, 정보자료 등으로 제공자 편리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 의약품 등 소비자가 원하는 분야별 구분은 부메뉴부터로 설계되어 홈페이지의 이용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메뉴부터 분야별 구분이 되어있는 U.S FDA 체계가 소비자 이용편의에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구성도 U.S FDA처럼 개선함이 요망된다.

5. 외국의 식품위해소통 추진 현황^{10) 11) 12)}

1) 미국

식품안전관리체계가 FDA, USDA, EPA로 다원화되어 있어, 위해정보소통도 각 부처별로 수행되고 있다. 각 기관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FDA

위해 커뮤니케이션 자문 위원회(Risk Communication Advisory Committee)가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데 이 위원회는 FDA의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실행의 개선, 관련 연구 검토와 평가, 최신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시행

10) U.S FDA(2006), JIFSAN.

11) FAO(2005), Food Safety Risk Analysis Part 1 An Overview and Framework Manual.

12) 정기혜 등(2011),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과 향후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 국가별 식품위해정보 관련 사이트 주메뉴 비교

한국	미국	영국	EU	캐나다	호주	일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국	식품기준청	식품안전청	식품검사청	식품기준청	식품안전위원회
http://www.kfda.go.kr	http://www.fda.gov	http://www.food.gov.uk	http://www.efsa.europa.eu	http://www.inspection.gc.ca	http://www.foodstandards.gov.au	www.fsc.go.jp
소비자 광장	Food	News and updates	About EFSA	About the CFIA	Food Standards	FSC Views
정보공개	Drugs	Policy and advice	News & event	Food	Consumer Information	식품건강영향평가 (위해평가)
뉴스/소식	Medical Devices	Business and industry	Topics A-Z	Animals	Science & Education	의견정보 교환 (커뮤니케이션)
정보자료	Vaccines, Blood & Biologics	Enforcement & Regulation	Publications	Plants		회의개최 예정과 위원회 실적
소개	Animal & Veterinary	Science and Research	Panels & units	Proactive Disclosure		식품안전위원회란
	Cosmetics	About us	Cooperation			관련 사이트
	Radiation-Emitting Products		Applications helpdesk			
	Tobacco Products		Calls & consultations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12.

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식품·의약품 관리 개정안에 따라 자문 위원회로 부터 커뮤니케이션 관련 자문을 받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 발생시 FDA의 요청에 따라 자문활동을 시작한다.

(2) JIFSAN

JIFSAN은 미국 FDA의 CFSAN(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및 CVM(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과 메릴랜드 대학교 간의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1996년 4월 설립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정부출연기관이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와 국가 식품안전프로그램 및 국제 식품규격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 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 정책 연구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식품안전성 및 영양, 가족의 위생 및 생산, 교육을 촉진하고 있다. JIFSAN은 특히 위해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및 상호 작용, 위해소통에 대하여 훈련 받은 사람의 활용, 위해정보를 전달받고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JIFSAN이 견지하고 있는 위해소통의 절차는 배경 정보 → 준비 및 모임 → 유포 및 배급 → 검토 및 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위해소통의 주요 요소인 3M(Message, Messenger, Media)을 주장하고 있다.

(3) USDA

농무성(USDA)의 식품안전연구정보(Food Safety Research Information)센터에서 식품안전 업무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정보소통시스템(web site)운영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 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관련 뉴스와 정보, 그리고 미국 정보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 및 전문 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eb site에서는 약 500여개 식품 안전 연구 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 뉴스 및 정보,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뉴스 및 정보 코너에서는 언론 매체에 보고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있어,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 영국의 식품기준청(FSA)

EU의 기본적인 위해정보 소통체계와 더불어 식품기준청이 FSA(Food Standard Agency)의 홈페이지에 식품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등

재하고 있다. 위생법, 광우병, 표시 기준, 유전자 재조합 식품, 식품 회수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조사 보고서, 현황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CODEX, 식품경보, 자문, 규정, HACCP 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 산업계에 제공하고 있고, 특히 2005년 6월에는 식품안전 사고로 인한 정보를 평가, 대응하고 정보를 소통하기 위한 「Food standards Agency Guidelines for Assessing and Acting on Information from Incident and Survey」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일본

위해평가에 대한 정보소통은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물성 및 후생노동성이 위해관리에 대한 정보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1) 식품안전위원회

위해평가 담당 기관으로 2003년 7월 1일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하여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의 전개로 총리 직속기관인 내각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집행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농림수산물성, 후생노동성, 소비자청 등으로부터 요청되는 건강위해평가만을 담당하고 있고, 그 결과에 근거한 기준 및 규격의 설정업무는 농림수산물성과 후생노동성이 담당하며 설정결과는 '식품안전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해평가결과는 인터넷에 평가위원회 개최일정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식품안전위원회(원칙적으로 매주 목요일 개최) 및 전문조사회 등의 회의 전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회의록을 Homepage에 게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대상의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식조사를 매년 실시하면서 소비자들과의 소통역량 향상에도 주력하고 있다. 주요한 활동은 일반 소비자 대상 온라인 및 모니터요원 대상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이후부터는 조사시점에 이슈화되는 위해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조사가 추가되었다. 즉, 기존의 어떤 물질에서 불안을 느끼고 왜 느끼는지 등의 일반질문에서 2011년 8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여부와 육류 생식의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섭취현황이 추가되었다.

(2) 소비자청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소비자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해지면서 2009년 9월 내각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기존 후생성 및 농림수산성의 식품표시 관련 업무가 소비자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위해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기관으로 외부의 영향 없이 투명하게 식품안전정보의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청은 위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조정기능을 맡고 있다. 즉,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생활에서 생긴 사고정보 Data에 기초하여 사고의 경향 및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사고를 관계기관 및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쌍방향의 정보 및 의견교환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을 보면 소비자단체, 소비자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NPO법인, 공익법인에게 원활한 의견교환회 위탁, 지역이나 교육현장에서 실험, 실습이나 체험학습 등을 통한 Risk 및 안전에 관한 지식습득활동 지원, 개발자·설계자 등의 전문가와 소비자와의 의식공유 등이며 특히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중개역을 담당함으로써 원활한 정보공유 및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다.

6. 위해교류에 관한 인식 파악

1) 조사개요

<표 5>에 제시된바와 같이 소비자 412명과 정책담당자 78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의 두 번째주부터 2주간에 걸쳐 현재 우리나라 위해교류 현황과 2005년 이후 발생되었던 6대 식품사고에 대한 인지,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조사가 온라인 설문, 이메일 설문, 자가기재식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¹³⁾.

13) 애당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건이 포함되었으나 아직도 진행중인 이유로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함.

표 5. 조사개요

구분	소비자			정책담당자		
	소계	1차 조사	2차 조사	소계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조사대상	412명	288명	124명	78명	41명	37명
조사기간	2012.07.04 ~ 2012.07.20	2012.07.04 ~ 2012.07.11	2012.07.12 ~ 2012.07.20	2012.07.06 ~ 2012.07.25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자가기재 조사			이메일 설문조사, 자가기재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인식 - 식품안전의 불안감 정도 - 식품사고에 대한 인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사고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인식 - 식품사고 위해정보에 대한 인식 등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주요 조사결과

(1) 위해소통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률이 전체의 46.8%로 가장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인터넷, 인쇄매체 순

이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 농식품부 등 정부기관에서 식품안전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은 전체의 3.2%에 불과하였다.

이런 매체 선택의 이유는 68.0%가 접근이 쉬워서, 비의도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아서로 조사되었으며, 소비자가 얻은 식품안전정보 내

표 6. 식품 안전 정보 구득원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계	412	100.0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193	46.8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지식정보	124	30.1
신문, 잡지, 서적, 팜플릿 등 인쇄매체	62	15.0
정부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보건소 등)	13	3.2
판매원, 길거리 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8	1.9
대학이나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등	6	1.5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5	1.2
기타	1	0.2

용을 보면 전체의 31.6%가 식품사고 및 소비자 신고 사항, 식생활 정보로 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정보를 타의적으로 구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일본 식품안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양국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인식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위해물질에 대한 불안도가 한국은 80.7점, 일본은 77.2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국의 조사대상 소비자 60% 정도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해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유해물질 중 가장 유해하다고 인식되는 품목은 납, 카드뮴, 메틸 수은 등 중금속으로 100점 만점에 86.6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광우병, 동물의약품 및 항생물질, 잔류농약, 유해미생물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이물의 위해도는 낮게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식품과 체세포 복제된 가축으로 만든 식품 등의 경우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용 가구, 용기에서 용출된 화학물질 등이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가 불충분한 막연한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 품목은 체세포로 복제된 가축으로 만든 식품

표 7. 위해물질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불안 정도

(단위: 명)

구분	점수		매우 불안 (5)		불안 (4)		보통 (3)		불안하지 않음 (2)		전혀 불안하지 않음(1)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평균 점수	80.7	77.2										
오염물질(납, 카드뮴, 메틸수은 등)	86.6	74.5	207	67	144	170	51	100	10	31	0	2
광우병(BSE)	84.6	72.2	212	42	106	172	73	132	18	12	3	10
동물의약품, 항생물질	81.7	83.7	143	141	171	162	89	59	9	0	0	5
잔류농약	81.5	76.2	151	81	161	179	81	77	18	11	1	17
유해미생물(식중독 세균 및 Virus)	81.0	74.4	143	69	166	164	85	111	17	24	1	5
체세포 복제된 가축으로 만든 식품	79.9	80.6	143	114	148	172	101	75	16	13	4	1
가구, 용기포장으로부터 용출된 화학물질	79.7	78.9	119	117	185	136	93	92	13	20	2	2
유전자재조합식품(GMO)	79.1	82.3	124	117	164	188	106	61	17	2	1	3
식품첨가물	78.6	73.5	102	82	196	158	98	79	15	20	1	27
건강기능식품	74.6	75.8	77	56	174	200	136	94	23	12	2	5

주 a: $b/2060^1 \times 100$

b: 응답자수 \times 각 점수²⁾ = $(d_1 \times 5) + (d_2 \times 4) + (d_3 \times 3) + (d_4 \times 2) + (d_5 \times 1)$

c: $d_1 + d_2 + d_3 + d_4 + d_5$

$d_1 \sim d_5$: 응답자수

1) 총응답자수 \times 최고점수 = $412 \times 5 = 2060$

2) 매우 불안: 5점, 불안: 4점, 보통: 3점, 불안하지 않음: 2점, 전혀 불안하지 않음: 1점

로 나타났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소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이 전체의 43.7%, 그리고 지자체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체제 등을 요구하는 응답이 28.9%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한 조사와 연구

실시 및 결과 발표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25.0%나 되었다.

정부의 소비자와 소통 시 유의사항으로는 과학적,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8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향후 국가의 대처 및 관리방안, 소비자의 대응 및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식품사고를 일으킨 회사명 신

표 8. 소비자와 효율적인 식품안전 소통을 위한 정부 또는 기관의 역할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	순위	%	순위
계	100.0		100.0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33.4	1	-	-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	23.9	2	58.0	1
지자체 등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벌 권고와 의견 제시	15.8	3	34.1	2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조사와 연구실시 및 결과 제공	13.7	4	22.7	3
정부와 소비자의 의견 교환 추진	6.9	5	9.9	5
원전 등 긴급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	5.1	6	20.0	4
기타	1.2	7	2.2	6

표 9. 정부에서 식품안전 정보 제공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단위: 명)

항목	점수	전혀 고려하지 않음 (1)	고려하지 않음 (2)	보통 (3)	고려함 (4)	매우 고려함 (5)
	(a)	(c1)	(c2)	(c3)	(c4)	(c5)
과학적, 객관적 사실	85.2	5	12	63	122	210
향후 국가의 대처 및 관리 방안	81.3	5	24	68	158	157
소비자의 대응 및 주의사항	81.2	6	27	67	149	163
소비자의 정서	73.5	7	38	123	158	86
외국의 대처 동향 및 사례	72.4	5	29	139	184	55

속 공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주기적인 정보 공개 등이 제기되었다.

(2) 식품안전관리 만족도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식품사고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55점으로 더 낮게 조사되었다.

(3) 식품사고 대응 평가

이처럼 식품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 수준을 55점으로 평가한 이유는 식품사고에 대한 정부의 정부 제공량에 대해 총 조사대상자의 59.0%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고 있다, 28.2%는 거의 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정보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의 33.7%가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25.7%가 부처 간 책임 전가식의 대응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었고,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이나 의견이 미반영된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8.2%로 나타났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사회적 과장이 컸던 6개 조사대상 식품사고 중 쥐 머리 이물 사고와 불량만두소 사고에 대한 인지도가 소비자, 정책담당자 모두 1, 2순위로 조사되었다.

<표 12>에 제시된 바와같이 정부 대응에 관한 평가에서 소비자는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정책담당자는 중국산 멜라민 과자 사고를 최우선 순위로 조사되었고, 소비자는 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사고, 정책담당자는 불량만두소 사고가 가장 대응을 잘못된 사고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별 평가의 경우 <표 13>에 제시된 바와같이 소비자는 정보의 신뢰성(과학적 근거), 정책담당자는 정보전달의 개방성, 투명성을 최우선 순위로 평가하였고, 최하위는 소비자의 경우 정부 초기대응의 신속성, 정책담당자는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표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식품사고에 대한 정부의 정보제공 수준 평가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계	412	100.0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투명성 부족	139	33.7
법정부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부처 간 책임전가식의 대응	106	25.7
소비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방적 대책 제시	75	18.2
성급한 대응으로 부정확한 대책 제시(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확한 조사없이 대책 제시)	49	11.9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해정보 전달을 통한 대응	32	7.8
신뢰함	11	2.2

표 11. 식품사고별 인지도

(단위: 점)

식품사고	소비자		정책담당자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기생충알 김치***	5	61.4	3	89.0
불량만두소***	2	77.9	1	89.7
중국산 멜라민 과자***	4	72.3	4	88.5
쥐머리 이물 혼입***	1	79.9	1	89.7
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6	51.5	4	88.5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발생(노로바이러스)***	3	76.1	6	87.7

*** p<0.001

표 12. 식품사고별 정부 대응 종합평가

(단위: 점)

식품사고	소비자		정책담당자	
	순위	점수	순위	점수
기생충알 김치***	5	53.3	5	71.1
불량만두소***	3	53.9	6	64.4
중국산 멜라민 과자***	3	53.9	1	76.6
쥐머리 이물 혼입***	2	54.4	3	73.1
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6	52.2	2	75.5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노로바이러스)***	1	55.1	4	72.4

*** p<0.001

7. 맺으며

우리나라의 현재 위해소통 관리체계, 외국의 현황, 소비자와 정책담당자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위해소통의 선진화를 위한 몇가지 정책제언을 개진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중심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홈페이지

지는 주메뉴가 정보공개, 최신뉴스 등 공급자 편리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측면이 있어 US FDA처럼 주메뉴 구성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직접적인 정보 제공 분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도 식품위해소통의 통합화, 전문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등 관련 인프라의 설치 및 강화가 필요하다.

표 13. 조사대상 사고별 평가 점수

(단위: 점)

구분	계		기생충알 김치		불량만두소		중국산 멜라민 과자		쥐머리 이물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학교급식 식중독	
	소비자	정책 담당자	소비자	정책 담당자	소비자	정책 담당자	소비자	정책 담당자	소비자	정책 담당자	소비자	정책 담당자	소비자	정책 담당자
1. 정부 초기대응의 신속성	52.8	71.4	50.6	73.1	53.3	64.9	52.9	74.4	54.3	72.3	51.2	73.3	54.4	70.5
2. 정부 대응의 일관성	54.2	73.4	54.4	72.6	53.7	67.9	54.5	76.4	54.7	74.4	53.1	75.6	55.0	73.8
3. 정보전달의 개방성, 투명성	53.5	74.2	52.4	73.3	53.9	67.9	54.1	76.9	53.8	74.6	51.9	77.7	55.0	74.6
4.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표명	52.8	70.6	51.6	67.4	53.2	63.1	52.6	75.6	53.6	72.6	52.1	73.1	53.7	71.5
5. 정보의 신뢰성(과학적 근거)	55.2	73.1	55.4	71.8	54.6	62.6	55.6	79.7	55.6	71.5	53.3	79.5	56.8	73.6
6. 정보 전달 방법	54.6	71.4	54.6	69.7	54.4	62.8	54.7	78.2	55.7	72.3	51.9	74.6	56.1	70.8
7. 소비자 주의사항 등 대응방안 전달	53.1	71.2	52.2	70.8	54.2	61.8	52.7	75.1	53.7	73.6	51.5	74.6	54.3	71.3
8. 위해정보에 대한 객관적 시각	54.4	72.1	55.2	70.3	54.0	63.8	54.4	76.7	54.3	73.3	52.8	75.4	55.7	73.3
평균점수	53.8	72.2	53.3	71.1	53.9	64.4	53.9	76.6	54.4	73.1	52.2	75.5	55.1	72.4

세 번째는 위해소통의 쌍방간 당사자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겠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활용이 가능하므로 과학적이고 전문적 지식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처럼 소비자의 이용매체 우선순위는 TV 등 방송매체로 이들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연

령층이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식품위해정보 소통 선진화를 위해서는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 등의 활용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공개하는 위해정보의 전문성, 일관성,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부처 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긴밀한 업무협조도 더욱 필요하다. **무엇보다**